

대명소노 SONO

준법경영

임직원

행동규범(강령)

CODE OF CONDUCT

SONO

1. 대명소노 경영철학
2. 대명소노 핵심가치
3. 행동규범(강령) 제정배경
4. 행동규범(강령)

준법경영
임직원
행동규범


1. 대명소노 경영철학

사훈

親切, 誠實, 最善, 努力

대명의 사훈은 창업주 故 서홍송 회장님께서 경영철학으로 삼은 4가지 덕목으로
이는 모든 임직원이 항상 가슴에 새기고 실천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미션



“ Life Value Creator ”

모든 고객에게 열정과 헌신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하여 삶의 가치를 높여준다

핵심
가치

3C Values

Customer 고객중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고객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Credibility 신뢰우선	원칙을 지키고 투명하게 소통한다. 고객과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Challenge 도전정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내재화한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변화를 주도한다.

2 . 대명소노 핵심가치

■ 3C Values

I. Customer(고객중심)

- 1)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 2) 고객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II. Credibility(신뢰우선)

- 1) 원칙을 지키고 투명하게 소통한다.
- 2) 고객과 동료들 존중하고 배려한다.

III. Challenge(도전정신)

- 1)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내재화한다.
- 2)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변화를 주도한다.

3 . 행동규범(강령) 제정배경

대명소노의 경영철학(경영이념, 핵심가치, 경영원칙)과

대명소노의 Compliance 운영규정

(준법통제기준, 준법통제운영규정)을 기반으로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립하며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여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영활동의 구체적인 지침과 행동규범을 명문화하여

모든 임직원이 고객이나 거래선과의 영업 또는 업무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지침과 기준을

임직원 행동규범(강령 / Code of Conduct)으로 제정함

4 . 행동규범(강령)

행동규범 1. 법령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행동규범 2.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투명·자유로운 경쟁을 하고 적법하고
적정한 거래를 한다

행동규범 3. 개발·제조 등의 단계에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기준을 준수한다

행동규범 4. 회사 및 제 3 자의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및 기타 정보를
보호한다

행동규범 5.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를 법령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적법한 회계 및 공시기준을 준수한다

행동규범 6. 안전 및 환경에 관한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행동규범 7. 고용 및 근로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행동규범 8. 회사 업무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 상충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행동규범 1

법령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1.1 업무 수행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준법의식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든다.

- 임직원은 업무수행 전에 법률이슈가 있는지 숙고하고, 이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준법통제담당부서 내지 법무부서의 자문을 받아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 임직원의 법령 위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지 말고 즉시 준법통제담당부서 내지 내부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관련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 조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 법령 위반행위는 금지되며, '회사를 위하여', '고객을 위하여', '상사의 명을 받아' 한 경우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의 비품, 시설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행동규범 2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투명·자유로운 경쟁을 하고, 적법하고 적정한 거래를 한다

2.1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임직원은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임직원은 국내외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한다.
- 임직원은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2 국내외의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한다.

- 임직원은 사업 활동을 행하는 국가·지역에 적용되는 독점금지 및 공정경쟁에 관한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한 차별적 취급, 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활동의 방해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경쟁업체 또는 업계관계자와 가격설정, 비용, 생산량, 설비능력, 거래조건, 판매방침 등에 관하여 자료교환, 협의, 약정 또는 공동의 업무 진행 등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협력업체와 성실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생을 추구한다.

- 임직원은 가격, 품질, 납기 등의 거래조건을 공평·공정하게 판단하여 협력업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조건외 강제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성실한 거래를 한다.

행동규범 3

개발·제조 등의 단계에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기준을 준수한다

3.1 임직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안전성의 추구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 다양한 조건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연구개발, 설계, 생산에 만전을 기한다.
- 임직원은 제품의 결함, 제조과정의 법령위반, 외부 제보 등 중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련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2 임직원은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 사고발생시 경영진에 즉시 보고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원인규명·대책수립·재발방지의 활동을 실행한다.
-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여 경영진에 보고한다.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법률이슈·언론대응·보상절차 등 사고에 대한 해결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한다.
- 종합적인 결과분석을 근거로 예방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한다.

행동규범 4

회사 및 제 3 자의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및 기타 정보를 보호한다

4.1 임직원은 회사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호한다.

- 임직원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서 보호해야 하며,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활용한다.
-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이나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비밀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회사의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존중하며,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4.2 임직원은 제 3 자의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및 기타 개인정보를 존중하며, 고의로 침해하거나 부정한 사용을 하지 않는다.

-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 기타 개인정보 등을 동의 없이 사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벌금 등 형사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기타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권한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4.3 정보시스템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보안을 생활화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업무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계정이나 비밀번호 등을 신중하게 관리하여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 임직원은 사내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통신망 이용, 반출입 및 외부인 내방 등의 과정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행동규범 5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를 법령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적법한 회계 및 공시기준을 준수한다

5.1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 결의, 의사록 작성 및 공시 등을 하여야 한다.

5.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3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행동규범 6

안전 및 환경에 관한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6.1 임직원은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보호 및 위험예방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한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6.2 임직원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친환경 기업 및 사업장을 구축하여야 한다.

- 모든 환경유해물질과 화학물질은 관련법규 및 사내규정에 따라 보관·취급·폐기하여야 한다.
- 환경유해물질 또는 독성 화학물질이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되고 있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3 임직원은 프로젝트나 신규사업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서 고려한다.

- 연구·개발, 상품기획, 설계단계에서 환경유해물질 최소화,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 환경을 배려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보급에 힘쓴다.

행동규범 7

고용 및 근로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1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 임직원의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신체장애, 출신지역, 결혼상태 등에 따라 채용, 승진, 평가 등 인사상 불공정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법령에 정한 최저 취업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의 고용 및 법령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7.2 임직원은 조직원들의 의견을 상호 존중하고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가 발휘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회사 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통을 증진한다.
- 임직원의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회사의 무형적 자산을 인식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 원칙을 지키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임직원의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7.3 임직원은 건전한 조직 분위기 조성에 협력한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 차별적, 비우호적 행동이나 성희롱, 금전거래,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아니한다.

행동규범 8

회사 업무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 상충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8.1 회사 업무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고객, 거래업체, 정부기관, 기타 업무와 관련 있는 제 3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한 금전, 물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구매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나 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 또는 제 3 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지 않는다. 또한 그 정보를 이용하여 제 3 자에게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8.2 이해관계 상충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거래,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혜상대방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범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